

# 2021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 주요내용

-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 운영 : 실행계획, 우수공무원 선발 등
  - 적극행정 교육 : 전 직원 적극행정 교육 (직장교육, 사이버교육)
  - 중점과제 선정 : 3건
    -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운영 여건 개선
    -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 예산사업 조기 착수로 사업 적기 추진 및 이월 최소화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우수사례 및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상,하반기)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 사전컨설팅제도, 의견제시, 면책제도 운영 (연중)
- **소극행정 예방** : 소극행정 점검 및 신고센터 운영 (연중)



**고 성 군**  
**(기획감사실)**

# || 목 차 ||

|                                   |           |
|-----------------------------------|-----------|
| <b>I. 적극행정 추진개요</b> .....         | <b>1</b>  |
| 1. 적극행정 정의 및 기준 .....             | 1         |
| 2. 2020년 적극행정 추진현황 .....          | 2         |
| 3. 적극행정 추진전략 .....                | 3         |
| <b>II. 적극행정 추진체계</b> .....        | <b>4</b>  |
| 1.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역할 .....           | 4         |
| 2.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강화 .....            | 5         |
| 3. 중점과제 선정 .....                  | 6         |
| 4. 공무원 교육 .....                   | 7         |
| 5. 홍보 및 참여·소통 강화 .....            | 8         |
| <b>III.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b> .....     | <b>9</b>  |
| 1.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정 .....       | 9         |
| 2.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 11        |
| <b>IV.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b> ..... | <b>12</b> |
| 1.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               | 12        |
| 2. 적극행정 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      | 13        |
| 3.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 14        |
| 4.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           | 15        |
| <b>V. 소극행정 행태 개선</b> .....        | <b>17</b> |
| 1. 소극행정 엄정 조치 .....               | 17        |
| 2.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            | 18        |
| <b>VI. 행정사항</b> .....             | <b>20</b> |
| <b>VII. 향후계획</b> .....            | <b>21</b> |
| [붙임 1~5] .....                    | 22        |

# 2021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2021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해 능동적인 업무 추진 및 불합리한 행태규제를 개선하고, 소극행정 예방으로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확산하고자 함

## I 적극행정 추진 개요

### 1. 적극행정 정의 및 기준

#### □ 법적 근거

- 「행정기본법」 제4조(행정의 적극적 추진) / 2021.3.23.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감사원 규칙)
-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 2020.2.5.제정
- 「고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020.7.15.제정

#### □ 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 □ 적극행정의 판단기준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업무의 합목적성이 국민의 불편해소, 경제활성화, 행정효율 향상 등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행위로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창의성: 어떤 문제에 대해 기존과 다른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을 의미
  - 전문성: 자신이 맡은 일을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과 경험, 역량을 의미

- 적극적인 행위
  - 평균적인 공무원에게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
- 행위의 결과가 아닌 행위 자체가 판단의 기준
  - 적극행정은 행위 자체에 초점을 두며, 업무처리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해야만 적극행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님

## **2. 2020년 적극행정 추진현황**

### **□ 적극행정 추진 자치법규 마련**

-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2020.2.5.제정
  - 주요내용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 대행) 심의 등
- 「고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2020.7.15.제정
  - 주요내용 : 적극행정 면책제도 및 면책심의회 운영,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사항

### **□ 사전컨설팅 및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연중)**

- 사전컨설팅 신청 : 3건 신청(수용 1, 반려 2)
- 소극행정 신고센터 접수민원 : 7건(조사 처리)

### **□ 적극행정 홍보 및 교육**

- 고성군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운영 : 2019.12.16.부터
  - 적극행정 제도 소개, 적극행정 공무원 추천,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등
- 공무원 사이버교육 수료 : 201명('적극행정의 이해' 등)

### **□ 2020년 적극행정 추진 미흡한 사항 및 2021년도 개선방안**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미추진
  - ⇒ 개선 : 반기 1회 우수공무원 선정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전파 미흡  
⇒ 개선 : 우수사례 적극 발굴 및 카드뉴스, 리플릿 등 제작 홍보
- 적극행정 직원 교육 홍보 및 수료 미흡(정원의 50%이상 교육 목표)  
⇒ 개선 : 매월 교육신청 홍보를 통한 사이버 교육 이수율 향상,  
전문강사 초빙 직장교육 실시(8월까지)

### 3. 2021년도 적극행정 추진전략

|                         |  |
|-------------------------|--|
| <b>비전</b>               | <b>적극행정 확산 및 소극행정 혁파로 군민편익 증진</b>  |
| <b>추진 전략</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적극행정 제도 정비 및 적극행정 추진분위기 확산</li> <li>② 적극행정 지원 및 보상 강화로 자발적 동참 유도</li> <li>③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추진으로 군민체감도 제고</li> </ul>              |
| <b>추진부문</b>             | <b>세부 추진과제 (4대 부문 13개 핵심과제)</b>  |
| <b>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역할</li> <li>②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강화</li> <li>③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li> <li>④ 적극행정 공무원 교육</li> <li>⑤ 적극행정 홍보 및 참여·소통 강화</li> </ul> |
| <b>적극행정 공무원 우대</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⑥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정</li> <li>⑦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li> </ul>  |
| <b>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⑧ 사전컨설팅제도 운영</li> <li>⑨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운영</li> <li>⑩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li> <li>⑪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li> </ul>                            |
| <b>소극행정 행태개선</b>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⑫ 소극행정 엄정 조치</li> <li>⑬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li> </ul>  |

## II 적극행정 추진체계

### 1. 전담부서 및 역할

#### □ 전담부서(총괄) : 기획감사실 (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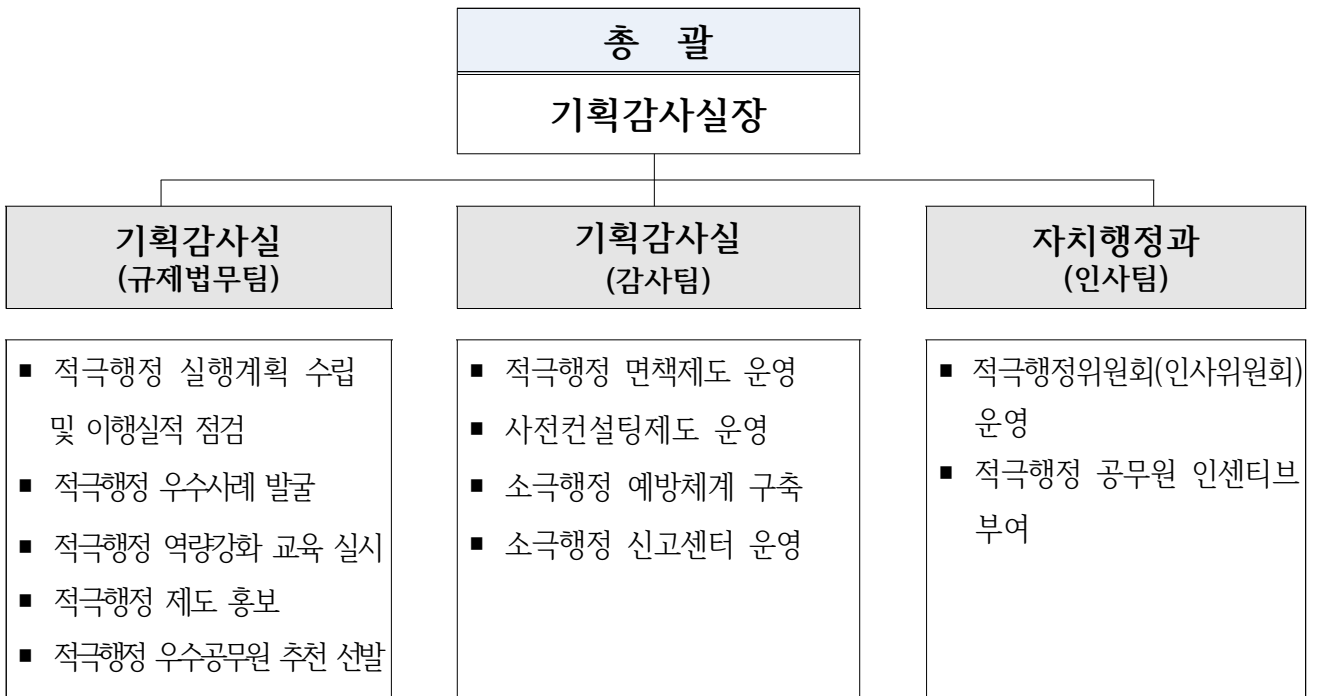
전담부서  
·  
책임관  
역할

-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실적 점검
- ▶ 적극행정 업무 조정·지원 및 타 정책·계획과의 연계·조정
-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전문가 조력 등의 지원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지원·협력부서(담당) : 감사담당, 인사담당

※ 책임관(기획감사실장) 적극행정위원회(인사위원회) 위원으로 적극행정 관련 안건 심의·의결

#### □ 적극행정 체계도 및 역할



## 2. 적극행정위원회 기능 강화

###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 인사위원회가 기능 대행

- 구성 : 7명 (위원장 부군수)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위원회에 직접 의견제시를 요청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적극행정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 회의개최

- 회의일시 : 2021.4. 16.까지 \* 여건에 따라 서면회의 개최
- 회의안건 :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안) 심의
  - 실행계획의 적정성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인센티브 부여 기준의 적절성
  -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의 적정성
    - ※ 이후 우수공무원 선발심사, 의견제시, 면책 등 적극행정 책임관의 심의·의결 요구 시 회의 개최
    - ※ 위원회 심의 후 실행계획 확정

### 3. | **중점과제 선정**

---

#### □ 선정배경

- 코로나 19 사태의 최대 피해자인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방안 강구 필요
- 관광이 지역 역점사업이므로 관광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020년 중점과제인 ‘제37대 정책공약’ 중 2개 정책분야 집중 추진

#### □ **【중점과제 1】 :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업장 운영 여건 개선**

- 환경분석
  - 코로나 19 여파 및 인구감소에 따른 소상공인 운영난 증가
  - 교통인프라 등의 약세로 제조업,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
  -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을 위한 지원 사업 확대
  - 각종 사업 추진에 따른 규제 해소방안 강구

#### □ **【중점과제 2】 :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 환경분석
  - 코로나 19로 해외여행이 제한되어 국내 관광, 특히 자연(야외) 관광지에 대한 관심 증가
  - 이러한 위기상황을 기회로 삼은 관광 활성화로 ‘고성 관광’에 대한 인지도 향상 필요
-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
  - 볼거리와 체험거리가 있는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행정 및 규제개선
  - ‘평화의 길 C코스’ 개방, 통일전망대 일대 체험거리 확대 등 평화 관광 상품 발굴



## □ 【중점과제 3】 : 예산 사업 조기 착수로 사업 적기 추진 및 이월 최소화

### ○ 환경분석

- 예산 확정(본예산, 추경) 이후에도 사업 착수가 2~3개월 소요되어 신속 집행을 저조 및 이월예산 증가
- 착수 지연, 설계 변경 및 사업 중지 등으로 사업일정 차질

### ○ 중점과제 세부 추진방안

- 예산 편성시 사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예산 확정과 함께 사업 추진계획 수립
- 집행, 공사(설계) 중지 및 설계변경 최소화예산 계상 단계부터 충분한 조사와 검토로 신속한 사업착수 및 예산

## 4. 공무원 교육

### □ 직장 교육(집합)

- 교육일시 : 2021. 8월까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자치행정과와 협의하여 직원월례조회와 병행

- 교육장소 : 신관 3층 대회의실

- 교육대상 : 전직원(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 교육강사 : 도인재개발원 강사 인력풀 등 협조, 적극행정 전문강사 초빙

- 교육내용 :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 및 사례, 소극행정 감사 등 적극행정 마인드 강화를 위한 내용

※ 심화교육 : 행안부·인사처·법제처·권익위 등의 방문 사례교육, 명사 특강, 적극행정 현장방문 교육, 민간기업 교육프로그램 등 활용 교육 기관 협의시 심화교육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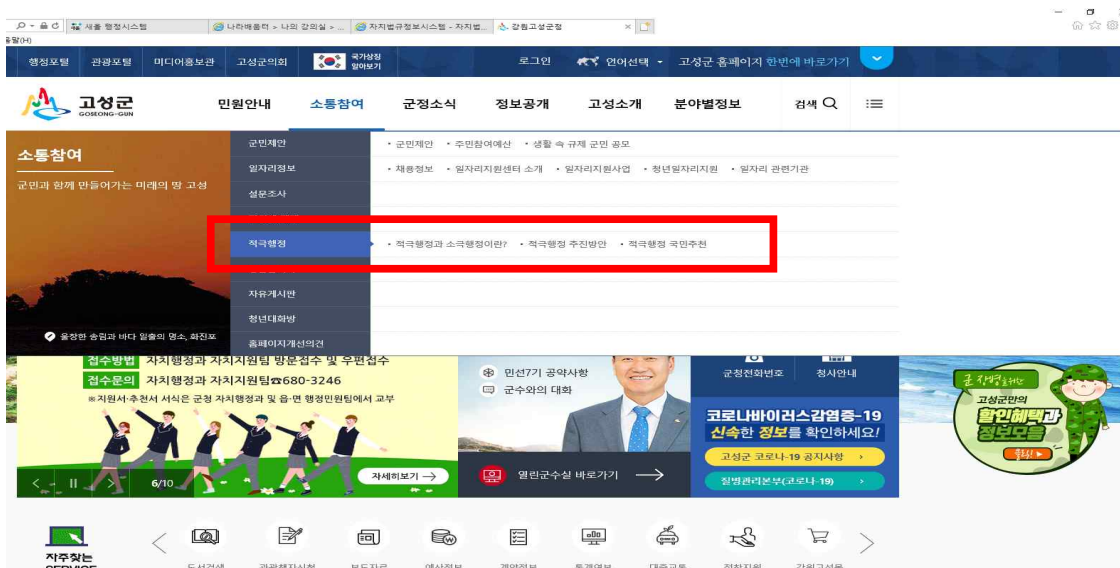
## □ 사이버 교육

- 기 간 : 2021. 1월 ~ 12월(연중)
- 대 상 : 전직원(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 교육기관 : 나라배움터 등을 활용한 사이버 교육
  - 나라배움터(법제처) : <http://moleg.nhi.go.kr/>
  - 나라배움터(지방자치인재개발원) : <http://logodi.nhi.go.kr/>
  - 나라배움터(강원도인재개발원) : <http://gangwon.go.kr>
- 교육과정 : ‘적극행정’관련 과정
  - ※ 예시) 적극행정의 이해, 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등
- 교육홍보 : 교육신청 안내 메신저 발송 전직원 교육 독려
  - ※ 2021.2.23. 교육홍보 메신저 발송

## 5. | 홍보 및 참여·소통 강화

### □ 주민 및 공무원 홍보

- 고성군 홈페이지 전용코너 운영 : <https://www.gwgs.go.kr/kor/index.do>
  - 메인화면>소통참여>적극행정 : 3개코너
    - ※ 2019.12.16.부터 전용코너 신설 운영
  - 고성군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 □ 언론 홍보

-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보도자료 제공 : 분기 1회 이상 및 상황 발생시
- 적극행정 사업추진 사진촬영 등 자료관리

## □ 적극행정 소통을 위한 홍보물 제작

- 제작시기 : 2021. 10월까지
- 홍보물 종류 : 카드뉴스 리플릿 또는 포스터 등
- 제작내용 : 적극행정 제도 및 우수사례 홍보
- 활용방법 : 주민, 공무원 대상 홍보 및 전파

# Ⅲ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 1. 우수사례 발굴 및 우수공무원 선정

### □ 적극행정 우수사례 발굴

- 시 기 : 반기별 (7월, 12월)
- 대 상 : 전부서 행정업무 전반
- 방 법 : 주민 추천, 부서 추천
- 우수사례 활용방법
  - 상급기관 적극행정 사례 제출(도 및 중앙평가) 및 우수공무원 선정 자료로 활용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시 기 : 반기별 (7월, 12월)
- 대 상 : 전부서 적극행정 추진 우수 공무원(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포함)
  - ※ 적극행정 업무담당자가 기관 적극행정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가능. ex) 적극행정 업무 담당자, 소극행정 관리 담당자 등
- 추천방법 : 주민 추천, 부서 추천, 기타
- 선발인원 : 반기별 5명 이내 ※ 심사건수에 따라 조정 가능

○ 선발방법

- 1차 : 실적검증을 통한 후보 선정
- 2차 : 직원 투표(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 3차 :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 선발기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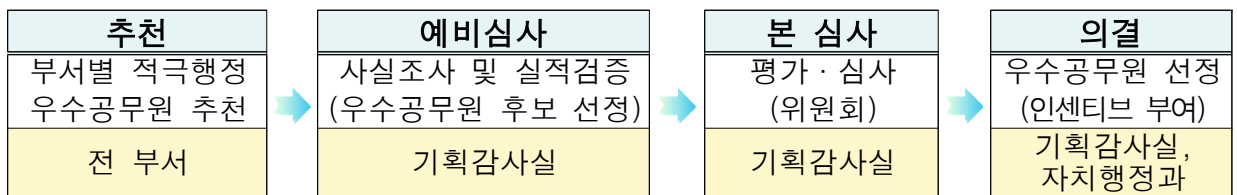
※ 기준 : 적극행정 노력도, 성과의 탁월성, 인사여건 등을 고려해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발

○ 선발요건 : 적극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창출한 자, 창의적·도전적 정책을 추진하고 성과 달성을 위해 노력한 자, 그 밖에 적극적인 업무태도로 소속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추천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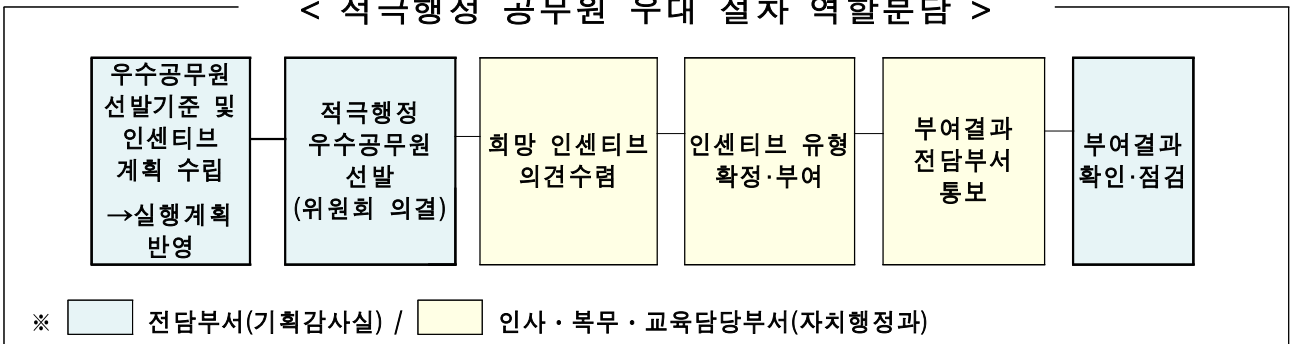
- 부서추천 : 각 부서장이 업무실적 및 성과 등을 고려하여 추천
- 국민추천 : ‘군 홈페이지 적극행정 국민추천 코너’에서 추천된 직원
- 기 타 : 상급기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 최종선정 : 위원회 심사·의결



□ 공무원 우대 역할분담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절차 역할분담 >



## 2.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 대상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직원
- 인센티브 유형 및 내용

| 구분      | 내용                                  |
|---------|-------------------------------------|
| 특별승진    | • 6급 이하, 승진소요 최저연수 도달자, 승진후보자명부 무관  |
| 특별승급    | • 6급 이하 호봉제 적용 공무원 1단계 승급           |
| 성과상여금 등 | • 성과상여금(6급 이하) S등급 부여               |
| 교육훈련    | • 장기교육 등 우선 선발                      |
| 실적가산점   | • 평정 시 3점 범위 내 실적가점 부여              |
| 근속승진 단축 | • 근속승진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단축          |
| 대우공무원   | • 1년 미만 남은 경우 즉시, 1년 이상 남은 경우 1년 단축 |
| 포상휴가    | • 5일 이내 범위에서 포상휴가 제공                |

- 우대 등급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

| 우대 등급 | 파격적 인사 인센티브 |        |           |            | 기타 인사 인센티브 |              |                |        |
|-------|-------------|--------|-----------|------------|------------|--------------|----------------|--------|
|       | ①특별 승진      | ②특별 승급 | ③성과급 최고등급 | ④교육훈련 우선선발 | ⑤승진 가점     | ⑥근속 승진 기간 단축 | ⑦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 ⑧포상 휴가 |
| 최우수   |             |        |           | 장기         |            |              |                | 5일     |
| 우수    |             |        |           | 장기         |            |              |                | 4일     |
| 장려    |             |        |           | 단기         |            |              |                | 3일     |

※ 우대 등급의 인센티브 범위( ) 내에서 담당자 희망 고려

-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
-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성과의 탁월성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대상자 개인희망 고려
  - 최우수, 우수, 장려 등 등급 기준에 따라 부여하는 인센티브 범위 설정
- (성과와 보상의 시차 단축) 보상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인사상 인센티브는 우수공무원 선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부여

# IV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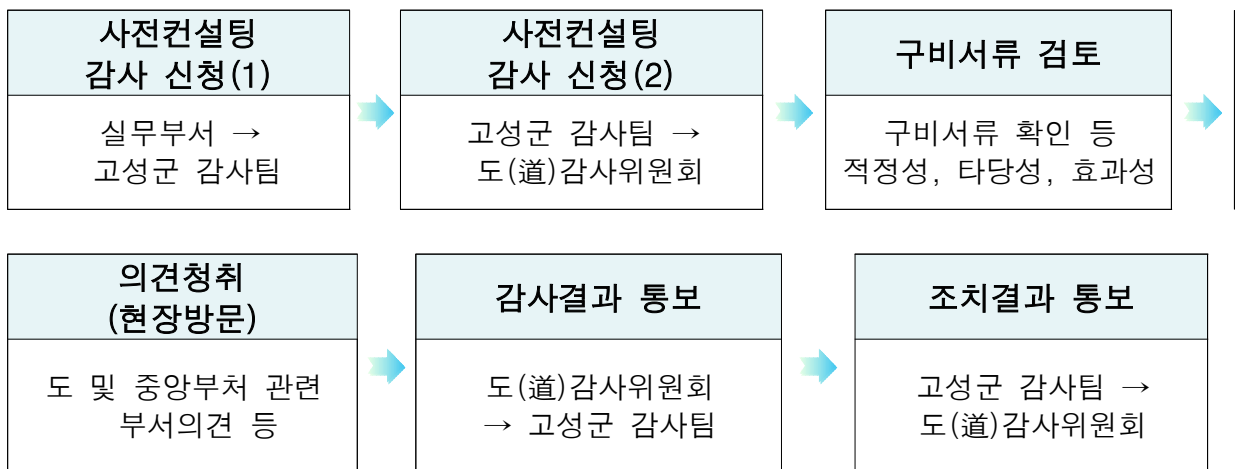
### 1.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개념

- (개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효력) 감사원·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 사전컨설팅 감사제도 활용

- 각 부서가 사전컨설팅을 선제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 : 감사팀
- 처리절차



## 2. |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제도 운영

### □ 의견제시 개요

- (배경)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사전컨설팅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선택가능성을 부여하고 의사결정 지원 창구를 다양화하며, 공무원을 중첩적으로 보호
  - (신청)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신청
    - 의견제시를 신청할 때에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
  - (검토) 의견제시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간사)이 안건의 중요성·시급성 검토
    -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거나 답변을 받은 것이 안건 제한사유\*는 아니며, 위원회 심의 시 사전컨설팅 의견을 참고자료로 활용
- \* 제한사유 : 관계법령이 명확한 경우, 단순 민원해소 목적인 경우,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 감사·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 접수 후 가까운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되, 답변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도록 수시회의 또는 서면회의 등 활용

### □ 의견제시 효과

- (징계등 면제) 의견제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 (상급기관 감사 등)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결 등 면제
- (징계요구 등 면책) 적극행정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면책 건의) 적극행정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 의견 제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 기관에 면책 건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반영)

< 참고사항 >

▶ 의견제시 면책을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의 관계

-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쪽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쪽으로 신청 가능
-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 효력 발생
- 감사부서와 적극행정담당부서 간 신청 안건 및 처리결과를 공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 사 례     사전컨설팅-의견제시 중복신청 사례

◇ (관세청) 유통기한이 남은 수입맥주 처분에 관한 사례

- 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수입맥주 판매가 어려워진 유통업자는 맥주를 처분하고자 했으나, 관계법령상 유통기한 도래 전 맥주를 처분하지 못함
- 유통기한이 남은 맥주의 처분에 대해 지원위는 향후 공매 가능성을 검토하여 폐기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나, 사전컨설팅을 재신청하여 폐기 승인 결정

## 3. |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 □ 면책제도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 면책기준

-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 사적 이해관계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사전컨설팅 신청 후 감사원,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
- \*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면책 건의제도 >

- ▶ (배경) 공무원이 본인에 대한 면책을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우며, 적극행정위원회의 적극행정 여부 판단에 대한 실효성 확보 필요
  - ▶ (내용)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명의로 면책 신청
  - ▶ (효과)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자문위원회(감사원), 적극행정면책 심의회(행안부) 등으로 안건 상정 및 회신,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 ※ 상기 면책 건의제도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 반영

## □ 자체감사의 적극행정 면책

- 근거 : 「고성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정 (2020.7.15.시행)
  - 면책 요건, 면책심의회, 면책신청과 처리 절차 등에 대해 규정
- 자체감사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징계요구 등 면책하도록 개선(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 4.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

### □ 추진배경

-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

## □ 구상권 행사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행정으로 인한 손해발생인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자제

## □ 징계 또는 민사상 책임소송 수행 및 형사상 피(被) 고소·고발시 지원

- 적극행정의 결과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 소명이 필요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의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소송 등 지원 근거 마련(지방인사제도과-5105호, '19.10)
- 징계 요구 등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근거 마련 : '21.8월까지
  - 「고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지침(가칭)」(훈령) 제정
  - 훈령 제정 시군 : 강원도, 원주시, 속초시, 철원군, 화천군

## □ 공무원 책임보험 운영

- 근거 : 「2020년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운영 지침」(행안부)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
- 고성군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운영(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 매년 가입(2021년도분 전년도 12월 신청), 고성군 전직원 대상
  - 보상내용 : 업무수행에 따른 과실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한 손해 배상 청구에 대해 공무원이 부담하여야하는 법률상의 배상책임 손해액과 청구사항의 조사, 방어비용을 보상
  - 보상한도 : 1청구당 2천만원, 연간보상 1억원 한도

# V

## 소극행정 행태개선

### 1. 소극행정 엄정조치

#### □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 □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필요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경고” 조치**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및 승급 제한기간 6개월 가산**
    - ※ 주의 또는 경고 조치시 근무성적평정 반영 등 자치단체별 규정에 따라 인사관리에 반영(인사상 불이익 부여) 가능

####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
|---|----------------|----------------|--------------------------------|---------------------------------|-----------------|
| 1. 성실 의무 위반                               |                |                |                                |                                 |                 |
|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                | 파면             | 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라. 소극행정                                   |                | 파면             | 파면-해임                          | 강등-정직                           | 감봉-견책           |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타 직위 전보, 성과평가·승진 시 불이익 등 인사조치 실시
  - 관리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징계 외 성과평가·성과급 등을 제한하여 **관리책임 강화**
    - ※ 자치단체별 성과평가 또는 성과연봉 등급 기준 마련 시 반영

- 기업 민원인 보호 활성화
  - 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 서비스 향상 등 서비스 현장 기마련 : 「고성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운영 규정」(제정 2014.5.30.)
  - ‘고성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현장’ 전직원 공문 전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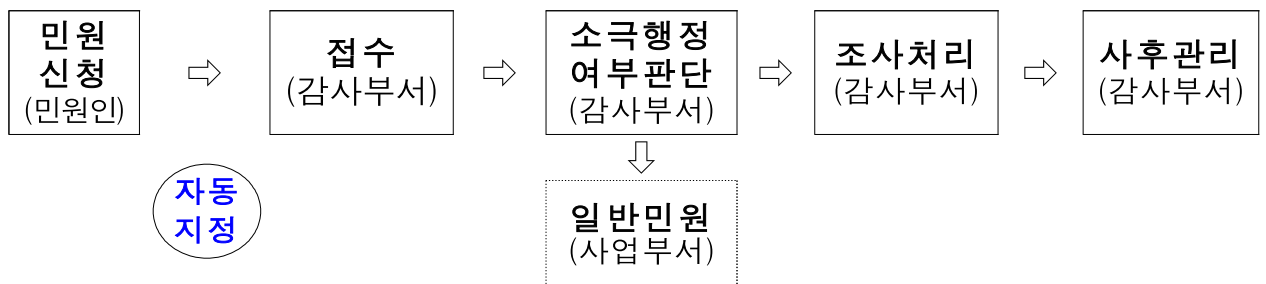
## 2.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 □ 소극행정 신고센터·운영 : 2019.3.22.부터

- 고성군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 국민신문고 연계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접수시 자체 처리계획 수립·처리 : 감사팀
  - ※ 2020년도 소극행정 신고센터 접수·처리 현황 : 7건
- 민원인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감사부서에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 소극행정 민원 처리절차

- 소극행정 신청 민원 처리절차



#### < 참고사항 >

- ❖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 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소극행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 감사부서로 배정하여 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처리 강화

- 소극행정 민원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원처분 취소·변경,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등 적절한 실시
-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패방지권의 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분 보호,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 필요

< 참고 : 소극행정으로 인한 고충민원 적극 감사요구 >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고충민원의 경우, 권고에 그치지 않고 감독기관, 감사원 등에 적극 감사 요구\* 추진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6조

- 인.허가 등 거부 시 국민신문고 표준설명서식을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법적 근거와 거부사유,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하게 설명

□ 소극행정 행태 자체점검

○ 점검기간 : 연 2회 (반기별)

○ 점검대상 : 전 실·과·소 및 읍·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 점 검 반 : 감사담당 (필요시 합동점검반 구성)

○ 점검사항

- 규제개혁 저해행태 : 부당한 조건부여로 기업이익 제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직권남용, 위법한 인허가 처리, 부당한 입찰 참여기회 제한, 불공정 거래행위 등
-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현황, 소극행정 유형, 시정조치, 처리사례 등을 점검

## □ 불충분한 설명 관행 개선

- 인·허가 등 거부 시 표준설명서식\*을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법적근거와 답변사유, 권리구제절차를 명확하게 설명

< 참고 : '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

- ◇ (구제절차 고지문 예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복합민원의 경우 협조부서의 검토의견,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

## VI 행정 사항

### □ 적극행정 실행계획 점검

- 점검시기 : 상·하반기 점검 (7월, 11월)  
※ 세부 점검사항 및 점검서식 행안부 별도 통보, 점검결과 행안부 보고
- 점 검 자 : 적극행정 책임관 (기획감사실장)
- 점검내용 : 수립된 실행계획의 시기별 추진상황 점검 및 미흡 상황 독려

### □ 적극행정 체계구축 자치법규 제·개정

- 「고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개정 : 2021.8월까지  
- 제4조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사항 추가(대통령령 개정 사항 반영)
- 「(가칭)고성군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 지원에 관한 지침」(훈령) 제정 : 2021.8월까지  
- 징계 요구 등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근거 마련

## □ 적극행정 운영 예산

### ○ 소요예산 : 2,340천원

-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 4명 × 70,000원 × 3회 = 840천원
- 적극행정 홍보물 제작(카드뉴스, 포스터) : 1,000천원
- 적극행정 직원교육 강사수당 : 500,000원 × 1회 = 500천원

### ○ 소요예산 확보 : 2021년도 1회추경 확보

※ 추경 예산 확보전 소요 또는 미확보시 예산팀 풀예산 등 협조

## □ 적극행정 종합평가

### ○ 2021년 적극행정 종합평가는 코로나 19방역 업무가중에 따른 각종 평가·감사등의 업무완화 방침에 따라 ‘지자체 혁신평가’와 통합 평가

※ 2020년 : 5개지표 14개 세부지표 100점(만점) ⇒ 2021년 : 3개 세부지표 10점

## VII 향 후 계 획

### ○ 적극행정 위원회 심의 : 2021.4.16.까지

### ○ 2021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전부서 배포

###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상,하반기) : 상반기 2021.7.30.까지

### ○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직장교육 : 2020.8월까지(코로나 상황에 따라 조정)

※ 사이버 교육 매월 참여 홍보

